

「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90 호

## 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제3조 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“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	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영 윤 ( 3 9 0 - 7 6 1 9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3조(위원회 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공사의 <u>경리관</u>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공사의 <u>분임경리관</u>인 사람(그 직에 재직하는 경우)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3조(위원회 구성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재무관</u>을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분임재무관</u>인 -----(- -----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